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제5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

제5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 목 적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예정('24.5.17)에 따라, 국가유산 미래 전략 및 비전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 개 요

- 주 제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
- 일 시 : 2023. 11. 24. (금), 14:00~16: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 참 석 자 : 문화재청, 국가유산 전문가 및 관계자 등

□ 세부일정

[사회] 채경진 (국가유산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시 간 | 일 정 | 주요내용 | |
|-------------|-----|------|--|
| 14:00-14:05 | 5' | 개회 | 참석자(내빈) 소개 |
| 14:05-14:10 | 5' | 개회사 | 최응천(문화재청장) |
| 14:10-14:15 | 5' | 기념촬영 | 제5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개최 기념촬영 |
| 14:15-14:45 | 30' | 주제발표 |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과제(안) - 조일형(국가유산정책연구원 팀장) |
| 14:45-15:00 | 15' | 휴식 | 휴식 및 장내 정리 |
| 15:00~16:20 | 80' | 종합토론 | ○ 좌장: 신희권(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토론 - 강봉원(문화재위원회 위원장/경주대학교 명예교수) - 김영운(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국립국악원 원장) - 이상석(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윤 주(사적분과 위원/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 소장) - 정상우(인하대학교 교수) - 정상철(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이유야(예인집단 아재 PD) |
| 16:20~16:30 | 10' | 질의응답 | 기타 의견 수렴 및 청중 질의응답 |
| 16:30 | | 폐회 | 폐회 |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

차례

“ 개 회 사 ”

최응천 | 문화재청 청장 • 01

“ 주제발표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과제(안) • 03

조일형 | 국가유산정책연구원 팀장

“ 토 론 문 ”

강봉원 | 문화재위원회 위원장/경주대학교 명예교수 • 33

김영운 |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국립국악원 원장 • 35

이상석 |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37

윤 주 | 사적분과 위원/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 소장 • 39

정상우 | 인하대학교 교수 • 41

정상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44

이유야 | 예인집단 아재 PD • 46

“ 부 록 ”

국가유산기본법 • 49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입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을 주제로 국가유산 분야의 여러 전문가 분들과 청년 대표를 모시고 제5차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5월 「국가유산기본법」을 공포한 데 이어, 8월에는 「문화유산법」 등 10개의 연계 법률도 개정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았으니, 이제 내실 있는 정책들을 채워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문화재청은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 6월부터 네 차례의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청년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해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문화재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보기 위한 다섯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네스코는 2015년 제20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발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산의 다양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경제 성장과 고용의 활성화를 이끌고,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자원으로써 유산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오늘 이 자리에서도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와 역할을 중심으로 한 전략 과제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문화재청은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고견을 토대로 국가유산 미래전략과 비전을 확정하여 12월 8일,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일에는 '국가유산청'을 출범시켜 국가유산 체제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국가유산을 통해 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참여·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정책포럼을 개최하기까지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과 그동안 함께 해주신 각계의 많은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시간인 만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

주
제
발
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과제(안)

조 일 형

국가유산정책연구원 팀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과제(안)

제5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2023.11.24.

(재)국가유산정책연구원

목차

01. 추진배경

03. 정책환경 분석과 대응전략

- 분석방법
- 분야별 이슈 및 대응

02. 지난 60여년의 성과와 한계

- 주요성과
- 한계

04. 미래비전 가치와 방향

- 전략 및 비전 수립
- 비전체계도(안)

05. 미래전략 및 정책과제

01 추진배경

01 추진배경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 반영

국정과제 추진

국가유산 체제 전환은 現 정부 국정과제(62번)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제고'에 포함

국정목표 연계

'행복한 사회', '글로벌 중추국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국정철학 반영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국민께 드리는 약속 | 국정과제 |
|--|----------------------------------|
| [약속 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 |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
| | 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
| |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
| |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출중한 스포츠 복지 실현 |
| |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 |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

01 추진배경

국제사회의 유산(遺産)관련 정책 동향 반영

UN

제70차 총회(2015)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채택

UNESCO

제20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 결의안(2015)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

EU

문화유산을 경제성장, 고용, 사회적 결속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



5

01 추진배경

국가유산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기본법 제정

2023년 5월 기존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국가유산기본법」과 유형별(문화, 자연, 무형) 3개의 체계로 재편

| 현행(문화재) | | | 변경(국가유산/24.5.17.부터) | | |
|---------------------|-------|----------------|-----------------------|----------------|--------------|
| 문화재 「문화재 보호법」 | 유형문화재 | | 국가유산 「국가유산 기본법」 | 문화유산법 | 문화유산 |
| | 민속문화재 | | | | - 유형문화유산 |
| | 기념물 | 사적지 등 | | | - 기념물(사적지 등) |
| | | 명승, 천연기념물 등 | - 민속문화유산 | | |
| 무형문화재 | | 자연유산법 | 자연유산 | | |
| | | 무형유산법 | - 명승, 천연기념물 | | |
| | | | 무형유산 | - 전통공연, 전통기술 등 | |

미래지향적 이념 내포

▲ 국가유산을 통한 가치창출, ▲ 국민들의 참여와 향유, ▲ 지속가능성, ▲ 지역 발전 등을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

6

02

지난 60여 년의 성과와 한계

- 주요성과
- 한계

02 | 지난 60여 년의 성과와 한계_주요성과

주요 성과

「문화재보호법」 등 제도 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 확대

제도적 기반 강화

1962년의 「문화재보호법」 단일법 체제에서, 대상에 따른 보존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법률 등을 제·개정

| 1962년 | 2004년 | 2006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5년 | 2019년 | 2020년 | 2023년 |
|--------|-------|----------|--------|--------------------|----------|--------|-------|----------------------|----------------------------------|
| 문화재보호법 | 고도육성법 | 문화유산 신탁법 | 문화재기금법 | ◦매장문화재법 ◦문화재수리법 | 전통문화대학교법 | 무형문화재법 | 신라왕경법 | ◦세계유산법 ◦역사문화권 정비법 | ◦자연유산법 ◦국가유산기본법 ◦근현대 문화유산법 |

문화유산 관리원칙 정립

2020년 가치보존, 진흥 및 활용의 정신을 담은 새로운 '문화유산현장' 제정 및 2022년 '한국 원칙' 선포

국가유산 가치의 다양화 추구 및 실현

중요문화재 중심이었던 보호대상이 주변환경, 경관, 공간 등으로 확대

02 지난 60여 년의 성과와 한계_주요성과

주요 성과

「문화재보호법」 등 제도 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 확대

첨단기술 기반 문화유산 보존

첨단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문화유산 안전관리 고도화 실현

활용사업의 다양화

고궁 중심의 활용사업(달빛기행 등)이 지역 중심(생생문화재 등)으로 확산, 문화유산 방문캠페인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 * 생생문화재(2008년), 향교·서원(2014년), 야행(2016년), 전통산사(2017년), 고택·종가집(2020년)
- * 2008년 4건→2022년 406건

국가유산 세계화 및 국제교류

유네스코 유산 지속 등재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체계 고도화

- * 2023년 11월 기준 세계유산 16건, 세계기록유산 18건, 인류무형문화유산 22건 등재

9

02 지난 60여 년의 성과와 한계_한계

한계

국가유산 보존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여전히 존재하며, 국가유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부재 및 체계적 관리 역량 한계

보존과 재산권 행사의 갈등

강력한 규제적 보존정책으로 인해 구도심이 슬럼화 되고, 개별 행위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등 불편 지속

국가유산 향유의 편차 발생

보편적인 향유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고령층, 소외지역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다각화 요청

부가가치 창출 방식의 한계

전통적 관점을 넘어 지역재생, 소득창출, 지속성장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정책적 접근 미흡

10

02 | 지난 60여 년의 성과와 한계_한계

한계

국가유산 보존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여전히 존재하며,
국가유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부재 및 체계적 관리 역량 한계

증거기반 정책 추진 한계

국가유산 보존, 관리, 활용 관련 객관적인 데이터 생산, 관리, 분석, 활용 등 추진 미흡

국가유산 관리체계 및 역량

지자체 등 국가유산 관리 현장의 전문성 부족 등 관리역량 미흡

국민참여의 확대와 협력

국민참여 및 소통·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및 행정체계 구축·운영 한계

1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과제(안) | 제5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03

정책환경 분석과 대응전략

- 분석방법
- 분야별 이슈 및 대응

03 정책환경 분석과 대응전략_분석방법

STEEP 분석

- 국가유산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등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국가유산 미래 발전방안을 수립함
- 거시적 환경 분석 기법인 'STEEP 분석'은 Social(사회), Technological(기술), Economic(경제), Ecological(생태), Political/Legal(정치/법) 다섯 가지 요소로 관심 대상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예측 방법임

<국가유산 관련 국내외 환경변화>

| STEEP 분석 | | | | |
|--------------------|---------------------------|----------------------|------------------------|-------------------------------|
| Social (사회적 분석) | Technological (기술적 분석) | Economic (경제적 분석) | Ecological (생태적 분석) | Political/Legal (정치/법적 분석) |
| 인구구조 변화 |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 발전 | 인플레이션 | 이상기후 현상 | 주변국과의 갈등 |
| 도시화 및 지역소멸 | 디지털 플랫폼 및 소셜 네트워크 | 리오프닝 | 국제사회 동향 및 대응 | 국제협력 강화 |

13

03 정책환경 분석과 대응전략_사회(So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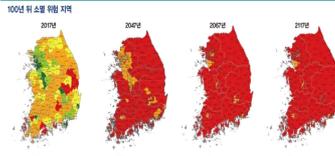
인구구조 변화



이런 모습, 상상은 해보셨나요?

저출산 심화 및 고령인구 급증,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 감소

도시화 및 지역소멸



인구 3만명 이하 지자체는
2023년 19개로 급증(2000년 6개)

삶의 가치관 변화



1인 가구, MZ세대 등 느긋한 삶을
즐기려는 경향 증가

대응 방향

국가유산 현장 인력 및 무형유산 전승자 확보, 지역의 국가유산을 활용한 경제적 가치 창출

14

03 정책환경 분석과 대응전략_기술(Technological)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 발전



빅데이터, AI 등 기술혁명에 따른 초연결시대 도래

디지털 플랫폼 및 소셜네트워크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플랫폼 등장과 소셜네트워크의 영향력 확대

대응
방향

국가유산 원천 데이터 확보 및 콘텐츠 개발, 국가유산 디지털 플랫폼 구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과학적 정책결정

03 정책환경 분석과 대응전략_경제(Economic)

인플레이션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 유럽 등에서 고물가 지속

리오프닝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여행수요 회복, 외국인 방문 증가 추세

대응
방향

국가유산 보수·정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한 민관협력 확대, 국가유산과 결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

03 정책환경 분석과 대응전략_생태(Ecological)

이상기후 현상



대형 산불 및 국지성 집중호우 등 발생 증가

국제사회 동향 및 대응



교토의정서('97), 파리협정('16) 이후 국제사회 대응 가속화

대응
방향

기후위기 분석 시스템 구축, 체계적 적응 및 현장 대응력 강화

03 정책환경 분석과 대응전략_정치(Political)

주변국과의 갈등



전반적인 관계보다 특정주제에 대한 갈등이 발생

국제협력 강화



국가 간 경제·안보 협력이 문화 협력으로까지 확대

대응
방향

국가유산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와 영향력 강화, 해외소재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 및 환수, 자연·무형유산 분야까지 ODA 확장

04

미래비전 가치와 방향

- 전략 및 비전 수립
- 비전체계도(안)

04 미래비전 가치와 방향_전략 및 비전 수립

국가유산 체제 전환의 의미

정책 방향의 전환

| | | | |
|-------|-----------|---|------------------|
| 목적 전환 | 국가유산 중심 | → | 국민 중심 |
| 인식 전환 | 지역개발 걸림돌 | → | 지역개발 및 성장의 핵심 자원 |
| 가치 전환 | 보존, 관리 대상 | → | 향유, 진흥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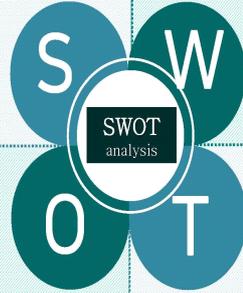
정책 영역의 확대

| | | | |
|--------|------------|---|-----------------------|
| 위상의 확대 | 문화재 | → | 국가유산 |
| 대상의 확대 | 유형유산, 지정유산 | → | 무형유산, 자연유산, 역사문화자원 |
| 공간의 확대 | 점 → 면 → 공간 | → | 권역(점·선·면, 공간, 사람, 문화) |
| 시간의 확대 | 과거유산 | → | 근현대유산, 미래유산 |
| 참여의 확대 | 정부 주도, 하향식 | → | 지방 및 민간 주도, 상향식 |

04 미래비전 가치와 방향_전략 및 비전 수립

SWOT 분석

- 지속적 법적 정비로 인한 체계성 마련 및 위상 강화
- 규제혁신 노력 및 국가 지원 확대
- 포괄적 보호체제로 인한 책임성 강화
- 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확장(공간, 자연, 세계 등)
- 첨단기술을 연계한 안전, 활용 강화
- 문화유산 R&D 실시 및 연구기반 강화
- 민관협력 및 ODA 사업 추진



- 규제로 인한 불편, 사회적 갈등 지속
- 무형유산(예능, 기능) 전승 위기
- 사회적 약자 향유 기회 미흡
- 데이터 생산 및 활용 미흡
- 산업 육성 및 활성화 부족
- 디지털 헤리티지 추진 기반 부족
- 국외소재 우리유산의 인식 부족

-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 국가유산 향유 수요 증대
- K-문화, K-콘텐츠 인기 지속
- 문화 및 관광 산업 활성화
- 국제협력 및 교류 확대
- 지방분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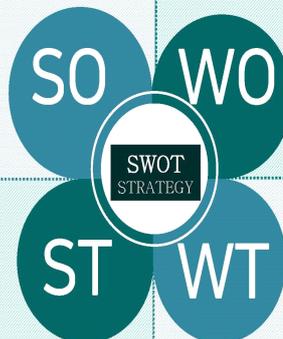
- 기후변화 등 재난위기 증대
- 도시화 및 지역소멸 위험 지속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 사회갈등 다변화
- 저성장, 고물가 지속
- 전쟁 등 국가 간 갈등 발생

21

04 미래비전 가치와 방향_전략 및 비전 수립

전략도출

-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국민 편의 제고
- 포괄적, 전문적 보호체계 구축
- 국가유산 보호 책임성 및 역량 강화
- 국가유산 R&D 고도화
- 국가유산 활용성 확장
-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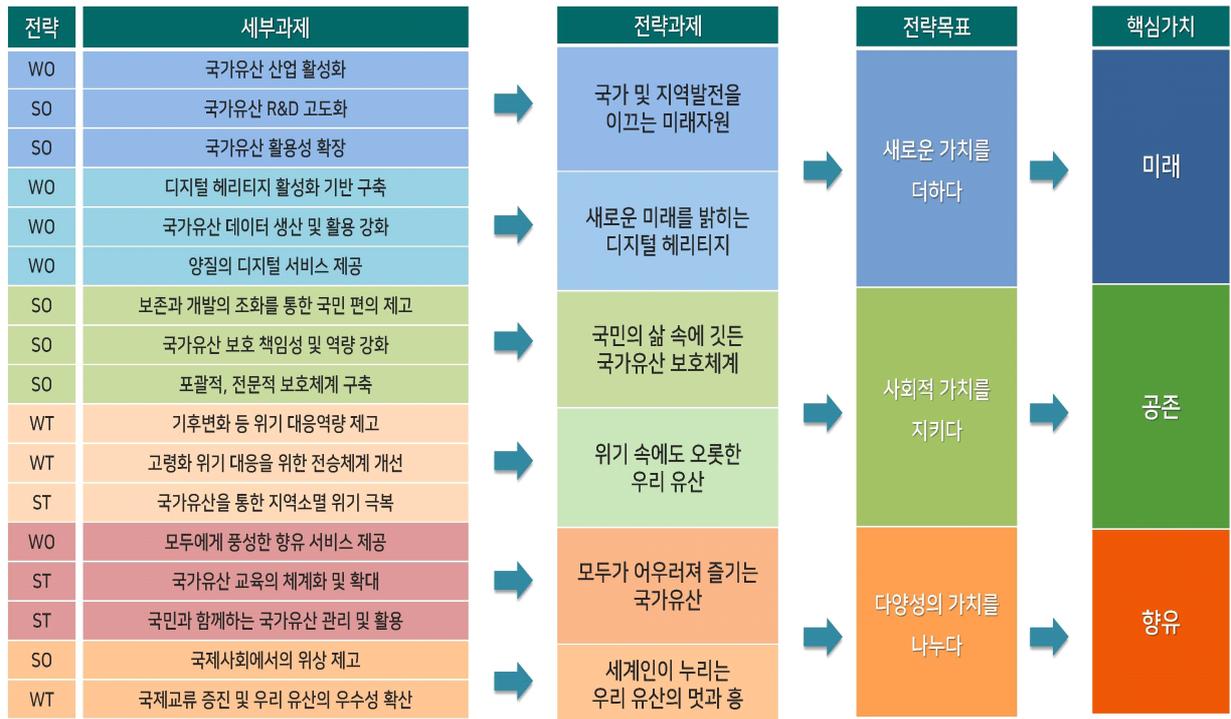
- 모두에게 풍성한 향유 서비스 제공
- 국가유산 산업 활성화
- 디지털 헤리티지 활성화 기반 구축
- 국가유산 데이터 생산 및 활용 강화
- 양질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

- 국가유산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 국가유산 교육의 체계화 및 확대
-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유산 관리 및 활용

- 기후변화 등 위기 대응역량 제고
- 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전승체계 개선
- 국제교류 증진 및 우리 유산의 우수성 확산

22

04 미래비전 가치와 방향_전략 및 비전 수립



23

04 미래비전 가치와 방향_비전체계도(안)



24

05

미래전략 및 정책과제



전략과제. 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과제(안)

국가 및 지역발전을 이끄는 미래자원

01 국가 및 지역발전을 이끄는 미래자원_① 국가유산 산업 활성화

산업육성 기반 구축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담당부서 및 전담 집행기구 설립 추진

- (가칭)국가유산산업진흥법 제정
- 문화재청 내 산업진흥과 신설

산업 진흥 지원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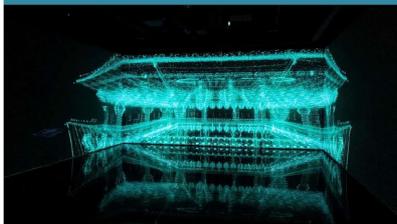


초기 창업기업 및 우수 사업체를 지원하고 기술교류의 장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도모

- 가치사슬에 따른 지원 (창업, 금융, 유통 등)
- 국내·외 비즈니스 네트워킹 활성화

01 국가 및 지역발전을 이끄는 미래자원_② 국가유산 R&D 고도화

연구개발에 따른 단계별 지원



국가유산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연구개발의 체계적 운영



R&D 사업 관리 전문가* 운영을 통한 상시 책임·관리 시스템 구축 및 R&D 사업 홍보·성과 공유 활성화

*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명칭은 연구관리전문기관별로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 Program Manager), 기술개발투자관리자(MD, Managing Director), 프로그램 디렉터(PD, Program Director) 등으로 다양함

01 국가 및 지역발전을 이끄는 미래자원_③ 국가유산 활용성 확장

지역 인프라 연계서비스 제공



지자체 문화시설·숙박·음식점 등과 국가유산을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K-Heritage 패스

국가유산 방문 시 지역의 음식점, 숙박 등 할인



국가유산 공간 활용 다변화



국가유산 공간에서 국빈행사, 국가기념일 등 행사 개최, 숙박 등을 추진하여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 유니크베뉴 협력체계 구축

* Unique Venue:
지역 특색을 가진 고택, 유적지 등에서 MICE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 (예: 경복궁 구찌 패션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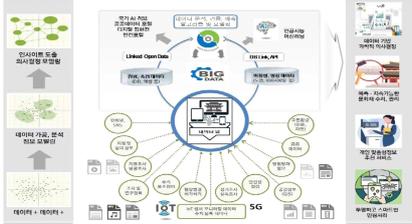
전략과제.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과제(안)

새로운 미래를 밝히는 디지털 헤리티지

02 새로운 미래를 밝히는 디지털 헤리티지_① 디지털 헤리티지 활성화 기반 구축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생산·수집된 각 유산별 DB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여 정책·교육·산업 분야에서 활용도 제고

- 빅데이터 구축
- 개방 확대

단순 열람에 그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MOU 체결 등을 통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과 민간참여를 위한 유인책 마련

- * 기관: 박물관, 국가기록원 등
- 민간: 사찰, 문중, 개인소유자 등

02 새로운 미래를 밝히는 디지털 헤리티지_② 국가유산 데이터 생산 및 활용 강화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결정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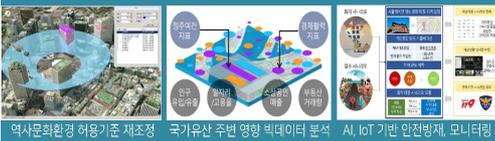


분야별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과학적 정책결정을 통해 국민신뢰성 제고

- 국가승인통계 개발

* 현황('23.10월 기준) : 문화재청 2건(문화재관리현황, 문화재산업조사), 문체부 22건, 산림청 13건

- 인공지능(AI)을 통한 보존, 관리



국가유산시센터(가칭) 설립



국가유산 분야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존, 관리, 활용 분야에 있어 AI 관련 전담조직 설립 추진

- ※ 참고: 국방부 '국방AI센터' 설립 추진
- 국방부는 2023년 5월 19일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이끄는 전문조직인 '국방AI센터'의 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AI센터추진단'을 출범
- 국방AI센터는 향후 AI 사업 기획, 데이터 플랫폼 구축, 체계개발 및 신속 적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 AI 분야의 총괄기관으로 2024년 창설 예정

02 새로운 미래를 밝히는 디지털 헤리티지_③ 양질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용자의 눈높이와 상황을 인식, 지능형으로 국가유산 향유 정보를 안내하여 국가유산 본연의 가치를 공유

-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 해설, 통역 등 안내봇 개발 및 보급

디지털 포용



디지털 서비스 제공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배려 강화



멀티미디어 동물 점자감각책 수어 아바타 @이류포울 문화재설명 3D프린팅 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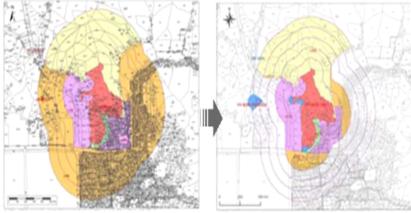
전략과제 . 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과제(안)

국민의 삶 속에 깃든 국가유산 보호체계

03 국민의 삶 속에 깃든 국가유산 보호체계_①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국민 편의 제고

보존과 개발의 조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수동적인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으로 대체

- 관리계획 도입
국가유산의 성격,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유산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정비 방안 수립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합리적 조정

매장유산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개발행위 시 매장유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매장유산 정보 고도화 및 발굴조사 지원 확대

- 토지이용 불편 해소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 보존조치 유적 관리 강화 (재평가 및 매입 의무화)
- 발굴조사 지원 확대

03 국민의 삶 속에 깃든 국가유산 보호체계_② 국가유산 보호 책임성 및 역량 강화

국가유산 수리의 진정성 제고



국가지정 유산 수리의 직접사업 비중 확대, 궁궐 복원 등을 통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확보

- 보수정비 직접사업 추진 확대
- 참여설계제도 도입
- 궁궐 복원 추진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사직단 등)

자연유산의 위상 확대



유네스코 등 전세계적 흐름에 맞춰, 자연유산 고유의 가치와 특성에 맞는 관리 추진

-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 전통조경 관리 체계 정비
- 다양한 자연유산 발굴 및 지정

03 국민의 삶 속에 깃든 국가유산 보호체계_③ 포괄적, 전문적 보호체계 구축

국가유산의 포괄적 관리



지정유산 중심에서 비지정유산까지 정책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추진

- 비지정유산 전수조사
비지정유산에 대한 조사 및 DB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다양한 시대의 유산 발굴

지자체 전문인력 확충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지자체에 국가유산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관리역량 제고

- 기준마련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관의 자격요건 등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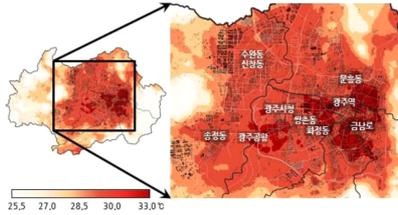
전략과제 .4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과제(안)

위기 속에도 오롯한 우리 유산

04 위기 속에도 오롯한 우리 유산_① 기후변화 등 위기 대응역량 제고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유형별 보존관리체계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적 분석과 기술연구·개발

- 문화유산 위험관리 강화(모니터링, 긴급보수 등)
- 자연유산 다양성 확대(생물종, 유전자원 발굴·확보)
- 데이터 구축, 예측, 진단 및 대응 기술 연구

위기관리 안전망 구축



부처 간 협력 및 국가유산 방재 전담조직 신설

- 공동대응 체계 활성화 (산불 대응, 흰개미 방제 등)
- (가칭)국가유산방재센터 건립

04 위기 속에도 오롯한 우리 유산_② 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전승체계 개선

무형유산 전승체계 다양화



「무형유산법」의 '전형유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종목 및 전승자 다양화

- 개방형 전승자 총원 (자격요건 완화, 기량중심 평가)
- 국립기관(국립국악원, 국립극장 등) 전승종목 지정
- 근현대 무형유산 등록제 도입

수리인력 수급 및 역량 강화



수리 기법 및 장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 및 전문교육 강화

- 전문교육 강화 (장인육성 교육 고도화)
- 수리인력 유출 방지
기술자, 기능자 등급화를 통해 현장 경력자에 대한 자격 인정

04 위기 속에도 오롯한 우리 유산_③ 국가유산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국가유산형 지역재생사업



근대등록유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기초로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 활성화 도모

▪ 구도심 재정비

유산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지역의 보존·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이 상생하는 공간 조성

지역유산의 브랜딩화



경동에서 만학단예과그림
올모스트홈스테이, 하동

지역의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인구 유출 방지

▪ 마을기업 육성

지역유산을 활용한 마을 중심의 국가유산형 기업 설립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

국가유산 일자리 창출



국가유산형 일자리 발굴* 및 활성화에 따른 지역사회 소득 안정화

*예: (가칭)국가유산 관리 감시단
현상변경 허가내용 준수 여부, 조건부 허가 후 조건이행, 무단현상변경 여부 등 감시, 모니터링

(참고 : 환경부 환경감시단, 여가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략과제 .5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과제(안)

모두가 어우러져 즐기는 국가유산

05 모두가 어우러져 즐기는 국가유산_① 모두에게 풍성한 향유 서비스 제공

| | | |
|---|--|--|
| <h3>향유 대상의 확장</h3>  <p>장애인, 노약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향유 격차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 없는 공간 확대 ▪ 대상별 활용 프로그램 개발 | <h3>향유 방식의 확장</h3>  <p>미디어 파사드, 실감형 콘텐츠 등을 접목시켜 국가유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p>  <p>프로젝션 매핑 참여형 미디어월 키넥트 아트</p> | <h3>활용 체계 개편</h3>  <p>지역 활용사업의 산발적·소규모 운영 및 지자체 인력 부족의 한계 극복을 위해 광역·거점 중심으로 사업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 조직(활용지원센터) 육성 ▪ 광역단위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 추진 |
|---|--|--|

05 모두가 어우러져 즐기는 국가유산_② 국가유산 교육의 체계화 및 확대

| | |
|--|---|
| <h3>국가유산 교육 기반 조성</h3>  <p>국가유산 교육을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사회통합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센터 활성화 유관기관(지자체, 교육청)과 민간교육단체와의 협력을 강화 ▪ 국가유산 교육 실태조사 추진 | <h3>국가유산 교육 위상 증진</h3>  <p>교육이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국가유산 관리 주체를 양성하는 과정이 되도록 양질의 교육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 비중 강화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정규과정화 추진 ▪ 사회 교육의 확대 거점 교육센터 확충 및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

05 모두가 어우러져 즐기는 국가유산_③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유산 관리 및 활용

국민 주도의 활용체계 구축



주민들이 직접 국가유산을 관리·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가칭)지역유산협의체 구성
관리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와 관리협약을 체결, 주민들은 일상관리와 활용을 추진하되 비용의 일부를 지원

국민이 동참하는 국가유산 관리



국가 및 지자체 예산지원 중심의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우리 유산을 국민 모두가 함께 보호하는 경험 제공

-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 기업의 메세나 활동 촉진



전략과제 .6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과제(안)

세계인이 누리는 우리 유산의 멋과 흥

06 세계인이 누리는 우리 유산의 멋과 흥_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세계유산 등재확대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학술연구 강화

- 잠정목록 다양화
- 학술연구 지원 확대

제도적 기반 정비



세계유산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계유산법」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강화

- 세계유산 영향평가 도입
- 세계유산 보존협의회 운영

국제사회 역할 확장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를 중심으로 '세계유산 해석',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고, 유네스코에서의 위상 강화

- 국제적 갈등에 적극 대응
 - 국제적 역할 확대
-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진출, 위원회 국내 개최 추진 등

06 세계인이 누리는 우리 유산의 멋과 흥_② 국제교류 증진 및 우리 유산의 우수성 확산

국외소재유산 관리·활용 강화



지속적인 조사로 국외소재유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수 확대 및 현지 활용을 높이는 정책을 동시 추진

- 유럽 현지 협력을 위한 거점 구축
- K-공유유산 확산

ODA 사업 확장



문화유산 보존·복원 중심의 ODA를 무형·자연유산 및 글로벌 이슈를 포함하고 수원국의 역량과 자립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 비교우위 전략을 통한 호혜적 사업 발굴
- 신흥시장 진출(아프리카, 중남미, CSI 등)
- 한-아세안 협력

전략적 해외홍보 강화



전시, 공연 등 단발성 행사위주에서 국가유산 접근성 강화 및 국제사회의 지지와 옹호를 통한 장기적 전략으로 전환

- 지식정보 접근성 (도서 발간, 논문 등 번역지원)
- 전통유산의 브랜딩 (우리유산 명칭 그대로 사용)
- 네트워크 확대 (지한파 육성, 현장 전문가 파견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과제(안) | 제5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감사합니다

2023.11.24.

(재)국가유산정책연구원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

특
편
문

강봉원 | 문화재위원회 위원장/경주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운 |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국립국악원 원장

이상석 |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윤 주 | 사적분과 위원/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 소장

정상우 | 인하대학교 교수

정상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이유야 | 예인집단 아재 PD

강봉원

문화재위원회 위원장/경주대학교 명예교수

발표문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사용해 오고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내년 5월부터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면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양하고 많은 내용을 깊이 있고 주도면밀하게 다루고 있는 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용어 변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정리되기를 기대한다. 발표자료를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유산 관리체계 및 역량과 관련된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문제이다. 매장 문화유산을 조사한 이후 특별한 유구의 경우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이를 현지 보존 혹은 이전/복원하여 활용하거나 전시관을 건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도는 높이 평가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대부분 유지·관리가 잘 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애당초 일부 유구가 전문가들의 고 평가(高評價)에 의해 이전/복원/전시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유산들은 재검토에 의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향후 문화유산을 평가하는 절차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지자체 문화유산 관련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둘째, 국가유산 R&D 고도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학박물관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다. 발표에서 연구개발, 전문인력 확충, 해외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가유산 관련 내용을 영문 도서로 출판하고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박물관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대학박물관 설치령이 제정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에 폐지되었고 대학평가에서도 박물관 항목은 제외되었다. 그 결과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박물관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심지어 폐관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근래 각 대학교 박물관은 대학 당국에서 예산 낭비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발표에서 ‘도서관법시행령’을 언급한 바 대학도서관의 경우 ‘대학도서관법’이 제정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이 과거 문화유산 발굴 조사 참여와 학술활동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유물 구입 등으로 문화유산 보존, 전시, 관리 및 사회교육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러 대학박물관에서 다양하고 많은 문화유산, 심지어는 적지 않은 국보와 보물을 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유산의 세계화와 전문가의 확충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이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학박물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대학박물관진흥법’을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하다.

셋째, 정책환경 분석과 대응전략_기후변화의 일상화라는 제하에 ‘이상기후 현상’을 언급하면서 산불 및 국지성 집중호우, 그리고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였다. SWOT 분석에서도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WT(weakness, threat)의 측면에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 역량 제고’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인지되고 있고 국가유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다른 한편, 토론자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지금보다 더 높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자동차와 온실도 없었고 인구밀도도 현재보다 훨씬 더 낮았으며 화석 연료도 사용되지 않았다. 과거 네 번의 빙하기(氷河期)와 세 번의 간빙기(間氷期)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여겨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후를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가 아니라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볼 수는 없는지.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문제를 염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많은 부작용과 엄청난 경비가 수반될 수 있다. 기후를 독립변수로 간주하고 국가유산 보존 관리에 대응하는 것은 어떤지 발표자의 생각이 궁금하다.

김 영 운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국립국악원 원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오늘의 포럼은 헌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정치하게 준비된 발제 내용에 크게 공감하면서 무형유산 분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첨언하고자 한다.

- 이미 발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정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근현대유산을 비롯한 비지정 문화유산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 이를 위하여 광범위한 기초조사와 이미 조사되어 학계에 보고된 유산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그간의 학술적인 조사 등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종목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 유·무형유산과 자연유산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유형유산과 자연유산의 ‘공간’에 무형유산으로 ‘내용’을 채운 ‘복합 체험’이 가능하도록 기획력을 살릴 필요가 있다. 고궁·능원·사찰·향교·고택 등의 공간을 공예·음악·무용·의례 등으로 채워서 관람·감상·체험을 통한 ‘국가문화유산을 삶 가까이 하기’가 가능하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이를 위하여 유·무형유산과 역사·민속 등 전통문화에 전문성을 지닌 공연·전시·기획 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하며, 이들이 유·무형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여 공연·전시·행사 등의 질적인 우수성을 확보하여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계기를 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찾아 이해하고 즐기는 문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어릴 때부터 잦은 체험을 통하여 친숙함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의 교과목이나 방과 후 학습 또는 현장학습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자주 접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양한 교과 내에서 문화유산을 소재나 주제로 다룰 수 있도록 교육과정 수립과 교과서 집필 과정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령층의 문화유산 향유나 전승 참여도 절실하다. 특히 이들은 어린 시절 전통문화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어, 그 가치와 정신에 대한 공감뿐만 아니라, 추억과 향수를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세대로 보인다. 향후의 문화유산 정책에서는 이들이 향유자로서의 참여와 전승자로서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개방형 전승자 충원은 문호를 더욱 개방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전승체계는 매우 폐쇄적이어서 재능이나 관심이 있어도 새롭게 전승체계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전승체계 밖에 있으나 뛰어난 기량과 전승능력을 지닌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전승자 충원 특히 보유자의 경우는 문호를 넓게 개방하여 기량과 전승능력에서 최고의 수준을 지닌 분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 ‘무형문화재’ 제도 초기에는 보유자에 비중을 둔 지정이 없지 않은 듯하였으나, 지금은 종목 중심의 지정이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종목지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종목들의 지정을 더 이상 늦추지 않았으면 한다. 나아가 국가의 문화적인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의 발굴·지정을 통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창극이나 국극, 사물놀이, 부채춤 등 근현대 무형유산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 상 석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024년은 본격적으로 국가유산체제가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이제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서 재인식되고 더욱 활용가치가 커졌으며, 글로벌 트렌드인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국가유산체제의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국가유산 미래 전략 및 비전' 세우는 것은 기본적이며 중요한 일입니다.

발표에서 제시된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와 주변 자연경관 및 공간을 함께 보호하고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성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정책환경 분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국민의 삶의 질 증시, 디지털 플랫폼, 경제적 신산업 육성, 기후변화 등은 자연유산과 긴밀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슈입니다. 미래비전 가치와 방향에서도 기본적 틀에 동의하며, 국가유산 산업 진흥과 국가유산의 관광자원화, 디지털 헤리티지 활성화 기반 구축, 기후변화 위기 대응, 지역주민 참여 및 민관협력 강화,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는 국가유산의 세계화 등은 자연유산 분야에서도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전략 및 비전을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적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유산에 대한 인식 향상, 국가 및 지자체와 시민과의 협력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자연유산분야의 천연기념물 및 명승, 그리고 전통조경에 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가적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국민 수요가 크고 외국 관광객 유치효과가 큰 전통조경 및 명승의 잠재적 가치를 높이고 산업화 및 세계화를 통하여 활용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태리 등 선진국에서는 자연유산을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연유산 분야의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천연기념물 및 명승, 전통조경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특히 지자체의 인력 부족은 심각하며, 실무분야의 전문성 향상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셋째, 기후변화 및 재해로 인하여 천연기념물 및 천연보호구역, 명승, 전통조경 등 자연유산은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관련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사전에 모니터링 및 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기념물, 명승, 전통조경유산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연유산의 보호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에 기여하고 지역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의 향유권을 확대하고 국가유산복지를 구현해야 합니다.

자연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높이어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전통조경이 세계인에게 인정받고 공유할 수 있는 K-컬처의 중심이 되고 국민의 일상의 삶에서 가까이 할 수 있어 풍요롭고 사랑받는 중요한 국가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의 활용

윤 주

사적분과 위원/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 소장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문화재청의 정체성이 오롯이 담긴 문구입니다. 60년이 넘는 문화재 행정을 지나며 ‘국가유산’ 체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도 이어질 본연의 가치입니다. 그 의미를 되돌아보며 저에게 주어진 국가유산의 활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 국가유산 체제에 돌입하기에 앞서 정책 환경을 분야별 이슈로 분석하고 대응하며 제시한 미래 비전 가치와 방향성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국가유산이 보존과 관리에서 ‘향유·진흥의 대상’으로, 국가유산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그리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국가유산의 활용성 확장으로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자 도출한 전략 과제들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균형적인 시각으로 살펴봐야 하고 그 특성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국가유산의 활용 정책을 위해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첫째, 국가유산 행정 체제 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전환되는 한국문화재단을 비롯하여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유산 체제에서는 ‘비지정 문화재’도 국가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광역거점 센터를 두고 지역유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주고, 정부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주민이 협력하고 연대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인구감소로 쇠락하는 지역에 기회요소로 국가유산의 가치와 장소성을 연계하려면, ‘지역과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지역 유산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고도와 역사도시는 물론이고 마을 단위와 유산가치를 지닌 공간과 문화유산·무형유산에서 자연유산에 이르기까지 지역성에 특화된 인프라를 조성해야 경제적 가치와 연동되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유산 활용과 연계하여 특화된 관광은 물론이고 일상에서 향유하고 나누는 ‘국가유산 복지’로의 개념 확장이 필요합니다.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가유산 복지로 일상 속에 함께하는 모두의 삶이 나아졌으면 합니다.

넷째, 국가유산의 세계화로 국제협력에 있어 우리 역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가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매력적인 ‘K-heritage’ 브랜딩을 안착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갈등관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가유산의 활용 중심에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가 절실합니다.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하는 여정에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미래를 토론하는 지금의 시간도 귀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이 효율적으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잇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기를 기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국가유산 미래 전략·비전

정 상 우
인하대학교 교수

1. 국가유산 미래 전략 마련 배경

- 국가유산 관련 법제 14개 제정
- 수리 및 발굴 등 문화재 보호 체계화
-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 증대
- 국가유산 활용사업 활성화
- 세계유산 보호 체계로 발전
- 무형유산 및 자연유산 법제화
- 역사문화환경 등 면으로서 보호
-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가유산 보호
- 문화재 용어에서 국가유산 용어로 전환

2. 기본법 제정에 따른 미래 전략 신규 요소

- 국가유산의 가치 강조(“창의성의 원천”)
-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 국민의 권리 강조
- 보호원칙의 다변화
- 포괄적 보호체계
- 국가유산의 “자원” 성격 강조(예비유산)
- 역사문화환경(경관과의 조화)
- 국가유산 영향진단

- 재난 예방 및 기후변화 대응
- 국가유산 복지
- 국가유산데이터와 국가유산 산업 등

3. 국가유산에 대한 인식 전환

- 국가유산은 창의성의 원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자원
- 국가유산은 국민이 보호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함
- 국가유산은 민간의 참여와 주도 형태로 보호
- 국가유산 보호는 보존(保存, preservation)보다 보전(保全, conservation)을 지향
- 국가유산의 다양성, 지역성 보장
-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정책은 타부처 유산 관련 정책의 모델

4.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새로운 국가유산 정책

(1) 산업적 접근 또는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는 정책

- 연구개발업 활성화 - 소재 및 장비 개발
- 지능정보화 및 데이터 개방 - 디지털 헤리티지
-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사회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 환경변화 대응 및 재난 예방
- 저출생 고령화
- 지역 정체성, 문화다양성, 역사 전쟁

(3) 국가유산 정책 거버넌스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제고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활용: 지역 정체성 제고, 지역 재생, 지역 브랜딩, 경제 활성화
- 보존, 관리, 전승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 방식은 전향적으로 전환

(4) 국가유산 영향진단(영향평가)

- 현상변경허가, 세계유산영향평가, 지표조사, 영향검토 등 다원화된 평가 방법을 가급적 일원화

-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문화재 지도 등 조기 보급
- 영향진단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조화

(5) 국가유산복지

- 문화복지 정책을 국가유산복지로 확대
- 국가유산복지와 국가유산교육 결합
- 이민·다문화사회 국가유산복지 정책은 문화다양성 정책과 병존

정 상 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산으로의 분류체계를 만드는 등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다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말의 성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잠정적인 길을 만들었을 뿐이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현재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진흥과 산업 육성은 결국 국가유산의 대국민 접점의 확장, 즉 저변확대와 시장 활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연(主演)만이 잘한다고 영화가 흥행하는 것이 아니듯이 주연인 국가유산만을 빛나게 그럴 것이 아니라 제4차산업혁명기술, 시장, 산업이라는 조연(助演, 국가유산 밖)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유산을 통한 국민행복, 지역발전,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조연, 국가유산 밖에 있는 기술, 시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국가유산 보존, 관리, 활용의 사회적 영향(impact)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가유산의 진흥과 산업육성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가유산과 일상생활간의 접점이 되는 다양한 매체나 여가활동에 유산 콘텐츠가 많이 노출되고, 그렇게 되도록 산업화가 한층 더 진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과 기업 쪽에서도 가치있는 일에 대해서 재정적, 시간적 투자처를 찾고 있는 만큼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분야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마케팅하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원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을 민간과 기업들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관심 없는 기업들조차 유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련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민간의 참여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투표로 할 수 있는 데 그러한 지표 중에 하나가 민간의 참여 정도일 것입니다.

그간 R&D사업이 많이 개선되고 예산 확충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에서 더 나아가 R&BD(연구개발사업화)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한층 규명해내고 학계와 공공기관 중심의 추진방식에 더해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R&D과제를 연구개발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를 갖고 있는 조직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관련 실무자는 R&D과제에 개인자격으로 부분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R&D과제에 의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파급력이 약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자격에 해당되는 별도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을 고안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화와 관련해서는 기업과의 연계 프로젝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유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우회생산(round-about production)을 할수록 높아질 수 있는데 외부와의 연결을 많이 할수록 국가유산의 중간수요가 높아지고 부가가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부 기업과의 연계 작업은 중요한 우회생산의 접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에서 담고 있는 큰 방향과 변화를 어떻게 추진력 있게 진행할 수 있을 지를 면밀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비전 과 핵심과제를 마련하여 발표한다면 이를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과제 추진 시에 내부에서 생기는 갈등을 어디에서 조정할 것인지, 국가유산과 그 종사자의 pie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동력과 추진의지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낼 것인지(적절한 인센티브) 등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답이 구체적인 방안 마련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무형유산, 연명치료가 아닌 재활치료로

이 유 아

예인집단 아재 PD

2024년 시행될 예정인 국가유산기본법은,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개념을 ‘국가유산’ 개념으로 대체하고, 유네스코의 ‘유산’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보여줍니다. 또한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앞으로 청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을 제외한 대중들, 특히 젊은이들 대부분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보면 미래가 마냥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에 대응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중을 설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많은 종사자들의 노력에 부응해 전통문화가 대중의 주목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려면 관의 적절한 정책기조 설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통기획자 양성의 필요성

예술 분야에서 기획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2020년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한국관광공사 콘텐츠 ‘범 내려온다’의 사례처럼, 적절한 기획과 연출을 거친 전통문화는 훌륭한 콘텐츠로 재탄생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생기려면, 전통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것을 적절히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획자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통기획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요람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문화재청이 산하로 두고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잠재가능성을 활용해 젊은 전통기획자를 배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두고, 문화재청 차원에서 전통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기존 기획자 혹은 신인 기획자들의 기량을 증대시킨다면, 기획자 품귀 현상을 겪는 예술계의 수요에 조금이나마 발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양질의 청년예술인 지원

젊은 전통예술인이 현 무형문화재보존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달리 말해 젊은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다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단체를 조직해 활동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들 중 대다수가 수입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지속 가능한 활동이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한편으로는 기존 청년을 대상으로 설정한 공모사업들을 확대하고, 직접 지원이 아닐지라도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확보 등 이들의 예술 활동 지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금전 지원보다는 공연장 등을 지원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문화재청에서 진행한 바 있는 문화재 지킴이나 서포터즈 활동과 같이 주제별 혹은 기수별로 청년예술인들을 모집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 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중의 시각에 맞는 콘텐츠

문화재 분야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우리 문화의 소중함 등으로 대표되는 당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꼭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콘텐츠의 문제로 넘어간다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대중들은 콘텐츠를 대하는 데에 있어서 당위와 명분에 마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콘텐츠 업계에서는 대중들의 시선을 끌 만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문화재 분야의 종사자들도 이 점을 특히 유념해 문화재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면서도 대중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다면 국민의 문화재 인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원형 개념이 전형으로 바뀌면서 ‘동시대성’의 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문화재가 과거의 산물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 쉬는 문화**로써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의조차 힘든 전통이라는 개념을 신성시하면서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고 특정한 틀만을 고집하는 것은 더 이상 지지를 받기 힘들 것입니다. 2023년, 우리들의 문화재는 지금 살아나느냐 사장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명 연장 이상의 의미가 없는 연명치료가 아닌, 다시 걷게 만들어주는 재활치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 정책

부
록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 4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5 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유산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제 7 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제 8 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9 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조사·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통하여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을 발견·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지역의 통합과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 3 장 국가유산 보존·관리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등록)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산뿐 아니라 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개발사업이 국가유산 및 그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적·문화적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도(古都)를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매장유산의 발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또는 수중에 분포·매장된 국가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의 성격 및 가치 규명을 위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은 발굴로 인하여 매장유산 및 주변 환경에 필요 이상의 훼손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발굴의 범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유산의 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등에게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수리를 지시할 경우 전통적 재료와 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제20조(자격 관리) ①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에 따른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단체만이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격을 검증·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재난 예방 및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상시적·체계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기후변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 4 장 국가유산 활용·진흥

제23조(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람·전시·교육·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경제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유산 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들의 적용·융합을 통하여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플랫폼 구축·운영 등 국가유산정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유산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등을 실시·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국가유산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국가유산 세계화

제28조(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국가는 국가유산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 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①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국가유산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외국유산의 보호) ①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유산(이하 “외국유산”이라 한다)은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유산이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외국유산을 유치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유산을 유치하면 그 외국유산을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유산이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유산이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유산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유산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유산이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유산이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국가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① 국가유산의 보존·활용·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2.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 유산 발굴
 4.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⑧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①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②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9409호, 2023. 5. 16.>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단의 사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단 소속 직원은 국가유산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 3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③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의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제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제3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제63조제1항제2호 중 “미관·문화재”를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⑨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복원·이전”으로 한다.
-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7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⑫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 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 ⑯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 ⑰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⑱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 ⑲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 ⑳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 ㉑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전통사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전통사찰”로 한다.
- ㉒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㉓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제4항제1호 및 제35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㉔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㉕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㉖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